

정 관

농업회사법인 엘앤티 주식회사

정 관

2017년 03월 제 정

2019년 12월 개 정

2021년 10월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 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엘앤티 주식회사(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L&T 라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빛과진리교회에서 (전액)출자한 빛과진리교회의 소속된 법인으로서 교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교회 소속 청년들의 농촌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취지로서 농촌체험을 실행하고 귀농인들의 농촌 경작을 돕기 위한 사업과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대한 예수교 장로회 빛과진리교회는 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 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 4조(사업) ①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영농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 1.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 1.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 1.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1.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1.농산물의 매취, 비축 사업
 - 1.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사업
 - 1.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 1.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1.대한 예수교 장로회 빛과 진리 교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 1.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③2항의 사업을 계획 및 시행은 빛과 진리 교회 당회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본 회사의 본점은 강원도 평창군에 둔다.
단, 이사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영업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6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강원일보나
강원지방신문 등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7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는 보통주식 40,000주로 한다.

제 8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00원으로 한다.

제 9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
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 진리 교회의 동의를 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는 10,000주로 한다.

제11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제12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
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
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식의 양도제한) ① 비농업인의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②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빛과 진리교회 당회의 승인 없이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

제14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15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 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신고
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 일 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 3장 주 주 총 회

제17조(소집) ①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 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 이사가 소집한다.

③대표이사의 유고시는 다른 이사가 소집한다.

제18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장의 질서유지 권 등)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한다.

②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

2.수권자본의 증가

3.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

4.자본의 감소

5.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④주주전원의 서면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결권등) ①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임 원

제22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본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②단 상법에 의하여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2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빛과 진리 교회 당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단,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 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 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 총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의 임기는 다른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의 잔임기와 같이 한다.

제26조(대표이사) ①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 이사가 행한다.

②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출자자인 빛과 진리 교회의 대표목사(위임목사/당회장)가 그 임기를 다하고 새로운 대표목사로 변경될시 교회의 부속기관인 (주) 앨앤티의 대표이사도 새로운 대표목사가 그 직을 승계한다.

제27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④임원(이사포함)의 보수와 퇴직금은 교회관련업무 보수와 중복지급은 할 수 없다.

제30조(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5 장 계 산

제31조(영업 년도) ①본 회사의 영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

다.

②당 해년도 결산 및 다음해의 예산(안)은 빛과 진리 교회 당회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이익배당)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해 산

제33조(해산의 결의) ①해산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해산에 관한 것은 ①항의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출자자인 교회의 당회에서결 처리한다.

제34조(회사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5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36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1항에 의하여 합병에 관한 것도 그 최종 승인은 교회의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청 산

제37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8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모두 원출자자인 빛과 진리 교회에 귀속된다.

제 8 장 부 칙

제40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빛과 진리 교회 정관 과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최초의 영업 년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 년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3조(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 회사의 최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취임 후 최초
의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4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2021년 10월 27일

농업회사법인 엘엔티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명진 (개인인감)(법인인감)

이사: 마경민 (개인인감)

이사: 이준표 (개인인감)

이사: 임기천 (개인인감)

이사: 정민경 (개인인감)